

부정맥 시술의 급여심사와 사전평가

김준수

성균관 의과대학 내과

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순환기내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(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: HIRA)

- 요양(의료급여)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 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(의료급여비용)에 대해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
- 이사회 및 위원회
 - ✓ 이사회
 - ✓ 진료심사평가위원회
 - ✓ 이의신청위원회
 - ✓ 전문평가위원회
 - ✓ 약제급여평가위원회
 - ✓ 중증질환심의위원회

진료심사평가 위원회

➤ 90명 이내 상근심사위원과 1,000명 이내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

➤ 조직 체계

✓ 중앙심사조정위원회 - 중앙심사위원회

✓ 의료평가조정위원회 - 의료평가위원회

✓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- 지역심사평가위원회

심사위원회 심사 처리절차(1)

- 청구인(요양기관)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접수
- 전산 점검 후 전산 심사
- 심사직원 심사
- 심사위원 심사
- 심사위원회 심사

심사위원회 심사 처리절차(2)

➤ 청구인(요양기관)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**일차 심사**

➤일차 심사에서 조정 시 **이의신청**

➤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**심판청구**

➤**재심사조정청구**

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(불복)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심사위원회 심사 처리절차(3)

➤ 심판청구

- ✓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
- ✓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건에 대하여 해당분야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하며,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청으로서 관련 업무 수행

심사위원회 심사 처리절차(4)

- ▶ 전문 심사위원 심사
- ▶ 해당 분과위원회 상정
- ▶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상정
 - ✓ 심의사례(공개)
 - ✓ 심사지침(공고)
 - ✓ 고시건의, 질의 등

부정맥 시술 시 점검 사항

부정맥 시술 전 고려 사항 (1)

- 부정맥 시술 전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합당한지 검토
 - ✓ 적절 약물, 충분한 용량, 투여 기간
 - ✓ 투여 전후로 부정맥 확인된 12유도 심전도 및 홀터
 - ✓ 심초음파
 - ✓ 증상 기재 의무 기록
 - ✓ 시술 기록지
 - ✓ 119 후송 일지 및 치료 기록

부정맥 시술 전 고려 사항(2)

- 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온 경우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하여 심사 시 제출
- 119 후송 온 경우 후송 일지와 AED 심실빈맥으로 속 준 기록
- CIED(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) 시술 전 부정맥 기록된 심전도 및 홀터 자료, 약물 치료 등은 미리 챙겨 제출해야 함
- CIED 시술 시 angiogram(subclavian venogram, CS angiogram), 고비용 재료(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개, ICE 사용)의 청구여부는 사전에 검토해야함

부정맥 시술 전 고려 사항(3)

- LB pacing 시 히스속 전기도 행위 청구는 반드시 심장내 전기도 히스속 전기도가 있어야 인정됨
- 심방세동 시술 시 CTI dependent AFL 추가 청구의 경우 시술 전 12유도 심전도상 전형적인 심방조동이 있거나 시술 도중에 CTI dependent AFL이 유발되어야 함
- 3D mapping 인정되는 빈맥성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재발한 경우에는 사용가능
- CIED 교환술 시술 시에는 시술 전 기기 검사의 배터리 수명 기재된 검사 자료 제출(잔여 수명이 3개월 미만, 전극선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1년 미만)

부정맥 시술 전 고려 사항(4)

- 전극선 새로 교체 시 기존 전극선, 기기 본체 제거 유무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짐으로 청구 전 보험심사과와 협의가 필요
- ICD 및 CRT 사전 심사 제도는 새로 시술하는 경우 외 외국에서 시술 당시 국내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되지 않고, 기기의 배터리가 고갈되어가는 경우에도 심사 신청이 가능함. 매달 10일까지 신청해야 신청 달 4주째 수요일 심사가 가능함
- CIED recall 혹은 결함으로 시술 시에는 심평원 청구 불가하고, 기기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야함

ICD/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(공고 제2019-37호) (1)

➤ 목적

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 및 심장재동기화 치료(CRT)의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➤ 사전승인 신청

- ✓ ICD 및 CRT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"원장" 이라 한다)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- ✓ 다만, 응급을 요하는 시술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✓ 신청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ICD/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(공고 제2019-37호) (2)

➤사전승인 심사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심사위원과 대한부정맥학회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 자문위원 등 4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ICD 및 CRT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
➤사전승인 심사 운영

✓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 다만, 심사위원이 사전승인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✓심사는 당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.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요청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월로 심사가 이월할 수 있다.

ICD/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(공고 제2019-37호) (3)

➤사전승인 심사 운영

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➤요양급여비용의 청구

✓요양급여대상으로 사전승인 받은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시술을 할 수 있다.

✓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승인 여부 및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
ICD/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(공고 제2019-37호) (4)

➤관계자 의견청취

투명하고 명확한 사전승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요양기관 관계자(시술 예정자 등)의 유선의견을 듣거나,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➤요양급여대상 사전승인 취소

원장은 사전승인 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사전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➤부칙

이 공고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